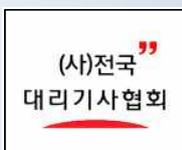


대리운전업법 자료집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www.wedrivers.net 1666-5634

-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20
 -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26
- [자료7]김윤덕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자료 1] 생명: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약탈경영의 대리업자,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라

대리운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운전서비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익숙한 생활서비스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 종사자만 도 2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시장도 엄청 커졌습니다. 매일 밤이면 전국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운전종사자들의 핸들에 의존해 이동 및 귀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객관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대리운전업,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등, 대리운전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이나 정책, 제도가 전무하면서,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와 수탈이 극심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렸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횡령하고 벌과금을 착복하며 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에게 덮어씌우는 등,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약탈경영으로 유지되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들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끊임없는 분규가 이어지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시장의 피폐화와 약탈경영의 현실에 주목, 이의 개선과 합리적 정비,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저희의 이런 뜻에 동의해주신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기윤의원과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이 세분 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되어 해당상임위원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야권은 국회후반기 타상임위로 이동한 문병호의원을 대신해 이미경의원 중심으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한 연말연시를 기해 각각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차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치권 및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촉구합니다.

1. 벌과금 갈취, 보험료 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체들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조치 및 검찰 수사를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2. 이미 국회에 입법발의된 세분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을 수정하고 통합하여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자료 2]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

- 국회의 역할, 대리기사의 역할
- 대리운전업법 삼국지, 그 현장을 본다
-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 좋은 일 하려다 지옥 가기
- 바른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회장님, 수정법안 좀 보여주세요....법이 통과되긴 하는 겁니까?..."

...왜 수정법안을 감추는 겁니까..."

"...몇놈이 모여서 끼리끼리 해쳐먹을거면 당장 때려치우세요..

...법은 우리 대리기사들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적잖이 연락 왔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수정법안을 줄 수 있느냐는 부탁과 함께...
돈금 없습니다. 수정법안이라니... 그리고 끼리끼리 해먹는 음모라니...

1. 현재 국회에는 강기윤의원과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이 세분 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안이 대표발의 되어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의원이 다른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회부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안소위로 회부되고 나면 위 세분의원들의 법안과 기타 의견들을 모아서 국토교통위의 단일한 수정법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해당국회의원들과 실무진에 의해 완성되겠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정법안은 국토교통위 결정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입법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지도 않은 수정법안을 달라고들 하니 ...쩍

그리고 '몇놈이' 끼리끼리 모여서 '한자리 해쳐먹고' 싶어도 그럴 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알고보니 몇가지 이유가 없진 않더군요. 특히 모카페에서 수정법안 운운하는 말도 있다보니, 미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의 궁금증이 발동한 듯 합니다. 기왕의 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페이퍼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수정법안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통해 대리운전업법이 만들어지는 양, 하는 것은 물론 과장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 공정한 대리운전법을 위한 노력 2013년 9월9일,국회에서 대리운전법 제정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

2. 2012년,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의 강기윤의원이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합니다. 이것은 17대, 18대 국회 당시 입법 발의된 바 있는 법안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하여 대리운전업자들만의 전횡을 보장하고 대리 기사를 두 번 죽이려는 악법, 그것입니다.

2013년 7월 민주당(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의원이 다른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법안으로서, 협회는 이를 환영하고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병호의원 법안은 기왕의 법안들과 달리, 업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대리 기사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불평불만에 머물던 대리 기사들이 스스로 법 제정의 주체가 되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대리기사단체가 국회를 들락거리며 국회활동을 하고 언론 노출이 잦게 된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간 아무런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했던 대리기사, 어느덧 정치권과 언론에 법안등 각종 활동을 기획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파트너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문병호법안 발의를 계기로 대리기사들의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이어서 발의된 이미경법안과 함께 이제 대리기사들의 참여보장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 대리운전업법, 공정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2012년 10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임원들이 국회 강기윤의원실을 향의 방문, 잘못된 대리운전업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향의문을 전달합니다. 대리운전업자들만을 위한 법, 대리기사를 두번 죽이는 악법입니다.

3. 현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문병호의원이 타상임위로 이동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문병호의원은 국토교통위에 계시는 이미경의원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단일한 중심을 잡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 대리운전업법 제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4.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의원이 며칠 전, 또 다른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문병호의원법안과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이 법안 준비에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황당합니다.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이미경의원 중심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이는 지난해 연말의 국회 간담회에서나 협회 성명서, 대리운전 싱싱뉴스를 통해서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굳이 비슷한 법 제정을 위해 협회가 '이중플레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제정의 속도가 늦춰지고 조정되어야할 사항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법제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굳이 협회가 개입하였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었겠지요...쩍 ^^)



▲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2014년12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리운전업법 관련 대리기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 정부와 집권 여당의 관심과 입장이 중요합니다. 국토부와 검찰 등을 움직이는 힘은 실제 여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야권이 입장 정리된다 해도 여당인 새누리당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간 여권은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2015년초, 새누리당 정책위와 행정부, 업계사람들이 참여한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권과 행정부가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관심을 보인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권의 반응은 신통치 않아보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두번째 보고서로 계속 됩니다.)

[자료3]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

- 국회의 역할, 대리기사의 역할
- 대리운전업법 삼국지, 그 현장을 본다
-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 먹고살기 위해 법이 필요해...
-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기
- 바른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6. "한국에는 유령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모 외신에서 한국의 대리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라 합니다. 밤 늦은 시간, 어느 구석에서 얼큰히 취해있어도 전화 한통화 후 편히 기다리면 어느새 찾아와서 손님의 차를 운전해주고, 도착한 손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로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 바로 대한민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들 손아귀에 쥐어진 몇푼 운행비는 노잣돈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20만명이나 존재하는 일꾼들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 바로 대리기사들입니다.



▲ 대리기사들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의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합니다. 20만여명의 종사자, 년 매출 수조원의 시장을 더이상 비공식영역으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진=세계일보)

한국사회가 유명들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노잣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미 적잖은 시장으로 성장한 대리운전업, 존재 그 자체가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의 제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의 행들에 의존해서 이동/귀가하는 현실, 이미 수조원시장의 20만여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법 제정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법이 필요해...

7.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의 생존이 걸렸습니다.

1) 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는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운행비, 열악해만 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결정적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대리운전업법이 발효되어 대리기사 단결의 환경만 만들어져도, 벌금문제, 보험료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문제는 한결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업계의 한 운영파트너로 성장한, 사단법인의 대리기사단체를 업자들이 감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요금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리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준요금제가 도입될 것이고 또한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시스템, 요금 내용이 설정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무법상태에서는 어떠한 표준요금제나 공공요금체계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업계가 단합하여 요금시스템을 정비할지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고 담합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몇년전 대구지역의 협회가 업계단결과 요금단합을 주장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이 공공성을 인정받을 때, 대리운전업법을 근거로 '공공요금심의 위원회' 혹은 안전기획부 장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발달한 IT의 기술을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시스템이 개발, 정착될 것이고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보장받는 공공요금도 도입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대안입니다.



3)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정비, 교육과 정책의 정착 등, 한결 진화하는 대리업계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기

8. 대리운전업법 제정 과정은 대리기사들이 단결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량업자들의 무도한 횡포를 혁파하고 합리적 풍토와 관행이 정착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질지라도 대리기사들의 단결과 정의로운 조직이 없는 한, 죽워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업자들의 장난, 이권을 노린 지역 폭력조직의 개입, 어용조직들의 출몰 등이 판치는 한, 대리운전업법은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기사와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 그 과정 자체가 대리기사의 건강한 힘을 모으고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진=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바른 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의견과 과정을 <대리운전 심상 뉴스>등을 통해 공개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왔고, 대리기사 세계의 관심과 단결을 호소해왔습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진중한 연구와 검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입니다.

생경하고 조잡한 좌익적 언사, 미처 충실한 검토와 고민 없이 배설되는 불평과 분탕질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소위 대리기사권익운동은 그 초라한 역량과 함께 차마 정상인이라 평하기도 힘든 몰지각한 몇몇 분자들의 분탕질로 인해 기사대중들로부터 존재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대리기사 카페에는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면서 동료기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세상의 막장질이라고도 평하는 대리판, 그 나락의 맨끝에서 대책없는 미숙아들의 뽀젓이 대리기사 권익운동으로 분칠한 채 고여 썩어온 것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은 이러한 구태를 척결하고 새롭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지도자, 진정성과 자기희생으로 가득찬 권익활동가, 건강한 조직의 건설과 단결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대리운전업법,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건강한 비판, 그리고 참여가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자료 4]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

- 김 종용(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사.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자.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업체단체와 대리기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 카. 부당행위 혹은 부당이득행위를 한 대리운전업체는 사업등록 취소, 혹은 6개월 영업정지를 명문화하여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제한 혹은 금하도록 함.(안 제17조)

대리운전업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사항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대리운전자 고용명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대리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할 것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3.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제13조에 따른 **대리업체단체** 혹은 **대리기사단체**(이하 "대리운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대리운전자교육 시간·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 혹은 공제조합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과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대리운전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 혹은 공제조합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대리운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등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및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예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화상담업무 등 직접적인 운전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금 부과, 특정보험 가입 강요 등 대리운전자에게 부당행위 및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단체) ①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업체단체를, 대리기사는 대리기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이하 두단체 공히 대리운전단체라 한다).

② 두 대리운전단체들은 법인으로 하며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대리운전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대리운전단체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위해 두 대리운전단체는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설립인가, 대리운전단체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 공동의 협의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리운전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대리운전단체의 사업) **대리운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대리운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지도
5. **대리운전자의 야간운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대리운전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5. (공제조합의 결성) **대리운전단체**는 각기 공제조합을 결성, 운영할 수 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대리운전단체**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리운전단체**의 경영 실태 및 사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자료 4] 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의안 번호	5876
----------	------

발의연월일 : 2013. 7. 4.

발 의 자 : 문병호 · 김경협 · 김광진 김기준 · 김재윤
남인순 민홍철 · 우원식 · 윤관석
전순옥 · 전정희 · 홍종학의원(12
인)

제안이유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의 방법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분쟁발생,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 · 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 · 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사.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자.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대리운전업 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사항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대리운전자 고용명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대리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할 것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3.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대리운전자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제13조에 따른 대리운전연합회(이하 "대리운전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⑥ 대리운전자교육 시간·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리운전자격증
-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 3. 대리운전자의 처우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하 "대리운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연합회) ① 대리운전자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설립인가, 연합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연합회의 사업)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대리운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지도
6.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연합회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경영 실태 및 사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

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대리운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대리운전업법안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조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대리운전자 교육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관련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관련 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국회 문병호 의원실 김제동 보좌관(788-2229)

[자료 5] 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

의안 번호	6179
----------	------

발의연월일: 2013. 7. 29.

발 의 자: 이미경·윤호중·장하나·박수현·
 유승희·최민희변재일·이윤석·홍영표·우원식
 ·은수미·김용익·남인순·강창일·강동원·
 박기춘·신장용·한명숙의원(18인)

제안이유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리운전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라.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도록함(안 제11조 제1항).
- 바.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리운전업자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3조).
- 아.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대리운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자.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35조).

대리운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대리운전자 고용인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을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방법·절차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할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교육을 이수할 것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3조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교육) ① 대리운전자 또는 대리운전 예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및 이용자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운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대리운전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리운전교육을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교육 시간·내용 및 대리운전교육 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의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교육 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11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③ 대리운전자 신고 절차, 그 밖에 대리운전자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이용자에 대한 피해배상 보장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요금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운전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한 표준요금표가 있는 경우 대리운전업자가 표준요금표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신고, 및 표준요금표 사용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알선수수료)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에 부과하는 알선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리운전보험등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이용자, 대리운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및 공제(이하 “대리운전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대리운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는 대리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대리운전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13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이용자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5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 예약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가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장비(프로그램)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마다 대리운전자격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및 요금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대리운전약관의 변경
2. 이용자의 안전 운송을 위한 조치
3. 대리운전 예약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대리운전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조합의 설립) ① 대리운전 종사자는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발기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대리운전종사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종사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대리운전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종사자의 교육훈련
4. 대리운전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제20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19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제21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제2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연합회)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조합 공제사업) ①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 제27조, 제29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대리운전종사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대리운전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대리운전종사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29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대리운전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2조에 따른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대리운전 자동차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3.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리운전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및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32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24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25조에 따른 공제조합
-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대리운전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조정 거부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 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受諾)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연합회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경영 실태, 각종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위반하여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중 15조 3항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4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2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43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이나 대리운전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하게 한 자
4.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요금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②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생략)

[자료 6] 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3977 발의연월일 : 2015. 2. 13.

발 의 자 : 김윤덕·오영식·부좌현·이원욱·
김춘진·유성엽·배재정·박민수·이찬열·최
규성·이상직의원(11인)

제안이유

(생략)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차.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카.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의 중개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대리운전자 고용명부
3. 대리운전보험 계약 체결 증명 서류
4. 자본금이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대리운전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기준·방법·절차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리운전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하 이 조에서 "대리운전자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4.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癩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필요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대리운전자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제13조에 따른 대리운전협회(이하 "대리운전협회"라 한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협회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⑥ 대리운전자교육의 시간·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대리운전자 간 요금에 관한 사항
5.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대리운전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운전약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이용자, 대리운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하 "대리운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요금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운전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협회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한 표준요금표가 있는 경우 대리운전업자가 표준요금표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신고와 표준요금표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동일한 대리운전보험의 가입강제, 대리운전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의 과잉 부과 등으로 소속 대리운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의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세표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협회) ① 대리운전자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설립인가, 연합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대리운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지도

5. 우수 대리운전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인증. 이 경우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협회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3.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제16조(협회 업무의 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조치 결과 협회의 업무 및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약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6. 제10조를 위반하여 대리운전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8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대리운전자격증 교부(안 제5조제4항)
- 대리운전자 교육(안 제6조제2항)
- 대리운전자 교육 이수증명서 교부(안 제6조제3항)
- 대리운전자 교육 위탁(안 제6조제4항)
- 대리운전자신고필증 교부(안 제7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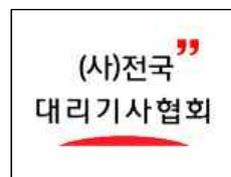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대리운전자격증 교부(안 제5조제4항), 대리운전자 교육(안 제6조제2항), 대리운전자 교육 이수증명서 교부(안 제6조제3항), 대리운전자 교육 위탁(안 제6조제4항) 등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동 비용의 대부분이 대리운전자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자로부터 총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김윤덕의원실 나성채 비서관(788-2111)



“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 ”

(사) 전국대리기사협회



www.weddrivers.net

1666-5634



대리운전 상상뉴스가 발행됩니다

대리기사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 바른 길 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동참을 바랍니다.

1. 독자 투고, 기사제보, 정보 제공을 받습니다.
2. 대리기사 동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전달 바랍니다.
3. 상상뉴스의 기자가 되어 주세요.
4.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주세요.
5.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인터넷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이메일 odeta@daum.net

트위터 @전국대리기사협회